

제30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수정의원 대표발의)

##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권 수 정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권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따르면 특별교부세 교부를 위한 기준과 동시에 이를 위한 비율이 정해져 있어 균형 잡힌 예산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부기준에 대한 명확한 비율 기준이 없어 시장임의의 배정을 통한 편중정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칫 자치구 예산배정에 있어 포퓰리즘성 배정, 자치구 통제용, 혹은 시장 주력 사업운영 시 시의회 등의 관리·감독영역에서 벗어난 예산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조례 개정안 적법성 검토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요청한 결과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 제2항, 동 시행령 제36조의 2에 의거 특별교부금의 각 교부사유별 교부율 등을 정하는 것에 있어 법령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조례안 내용이 특별조정교부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부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3. 『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의2, 제134조 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해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본 조례안의 내용적용에 무리가 없다.
4. 유사 사례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조례개정안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바 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추 67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28 판결)의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개정안은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있어 균형 잡힌 예산배정과 더불어 서울시장 주력사업에 특별교부금이 관리·감독 없는 눈먼 예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교부금 공개와 마찬가지로 이를 시민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